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02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(유종대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2027 ~ 2028년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, 대회 홍보 및 경기 응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체육대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서포터즈의 구성·운영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시민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기간, 활동범위(안 제3조 ~ 제5조)
- 시민서포터즈의 교육, 지원 등(안 제6조 및 제7조)
- 포상·보험가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~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8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(규칙)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2027 ~ 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성공적인 체육대회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(이하 “서포터즈”라 한다)란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대회 홍보, 경기 응원 및 시민 참여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4조(서포터즈의 구성) ① 시장은 대회 홍보 및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종목별·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포터즈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서포터즈의 활동범위)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 및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
2. 경기장 선수단 환영 및 응원 활동

3. 개·폐회식, 성화봉송 등 대회 관련 행사 참여

4.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을 활용한 대회 및 경기 홍보

5. 오산의 관광·문화·먹거리 등 지역자원 홍보

6. 그 밖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

제6조(서포터즈의 교육) 시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응원도구, 단체복, 홍보물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①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「오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보험 가입)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 중에 서포터즈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서포터즈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